공직선거법위반

[의정부지방법원, 2008.7.18, 2008고합145]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 박관수

【변 호 인】 변호사

【주문】

】 피고인을 벌금 2,000,000원에 처한다.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